

의안번호	2216994
의 퇴 인	오세희 의원
회 답 일	2026. 5. 15.
추계번호	26B1094

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□ (일부추계)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화훼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독성 화훼 취급·관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억 8,000만원(연평균 3,600만원)으로 추계됨

- 본 추계는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교육훈련 (안 제13조제1항)	36	36	36	36	36	180	36

주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사업의 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2조(우수화원의 육성)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품질관리에 필요한 설비, 전문인력 등을 갖춘 화원 및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화훼산업종사자가 운영하는 화원을 우수화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.(제1항) ※ 우수화원 선정 대상 확대	재량규정
2	안 제13조(교육훈련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·기술 등을 보급·전수하고 독성이 있는 화훼의 취급·관리를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(제1항) ※ 교육훈련 범위 확대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3	안 제16조의2 (독성이 있는 화훼의 안전관리 등) 신설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람 및 동물에게 위해(危害)를 줄 수 있는 독성이 있는 화훼의 종류·유형과 취급 주의사항 등이 포함된 목록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(제1항)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독성이 있는 화훼의 목록 작성과 소비자 안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(제3항)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12조(우수화원의 육성)	×	-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현행법은 우수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마케팅, 품질관리 및 이와 관련된 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라 우수회원 선정 대상이 확대되는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선정되는 우수화원에 대한 지원 기준·내용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
2	안 제13조(교육훈련)	○	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
3	안 제16조의2(독성이 있는 화훼의 안전관리 등) 신설	×	-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현 시점에서는 독성이 있는 화훼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독성 화해 취급·관리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화해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독성 화해 취급·관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다음과 같음
 - ※ 이때, 관련 예산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
[표 2] 독성 화해 취급·관리 교육훈련 실시 소요예산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내용	소요예산
독성 화해 취급·관리 교육훈련	36백만원 = 12회* × 3백만원** * 1회당 100명 교육, 연 12회 교육으로 연간 1,200명 교육 ** 회당 교육비(강사료, 보조인력, 교재비, 장소임대료 등)	36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추계 결과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화해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독성 화해 취급·관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억 8,0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3] 독성 화해 취급·관리 교육훈련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독성 화해 취급·관리 교육훈련 실시	36	36	36	36	36	180	36

주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교육훈련 실시 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김성원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성원	02-6788-4650	holystone@assembly.go.kr